

<p>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공적”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것을 말한다.</li> <li>2. “공무원등”이라 함은 시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li> </ol> <p>제 3 조(지급대상) 시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품수수 행위</li> <li>2.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li> </ol> <p>제 4 조(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 시장은 보상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상금 지급 대상·시기·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특별공적에의 해당여부</li> <li>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 5 조(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p>	<p>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6 조(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 7 조(환수) 시장은 보상을 지급한 후에 제 6조에 의한 보상금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lt;별표&gt; 부조리신고대상별 보상금지급기준(제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 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 상 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원</td> </tr> </tbody> </table>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제4조제1항중 “7인의”를 “7인이내의”로 한다.</p> <p>○안 제4조제2항중 “공보관·시의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보관”으로 한다.</p> <p>○안 제10조제3항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p>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보 상 금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3	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보 상 금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3	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7인”을 “7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예산총괄담당관·시정개발담당관·시민과장”을 “예산담당관·조직제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유사·중복 발간하는 앞에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을 삽입하고, 같은조제3호중 “및 홍보”는 이를 삭제하며, 같은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은 이를 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을 같은조제2항으로 한다.

①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제2항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출판관리계장”을 “출판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최초발간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심의생략) ①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생략된 간행물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간사는 심의생략된 간행물을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디자인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디자인소위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기타 디자인소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디자인소위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의 기획·구성, 연출, 편집·녹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영상물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기타 영상물소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2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디자인소위 및 영상물소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